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16

발의연월일: 2021. 11. 18.

발 의 자: 추경호·강기윤·강민국

구자근 • 권성동 • 김미애

金炳旭・김상훈・김석기

김승수 · 김영식 · 김예지

김용판 · 김정재 · 김태호

김형동 · 김희국 · 류성걸

박덕흠 • 박형수 • 배현진

서병수 · 서일준 · 송언석

양금희 • 유상범 • 윤두현

유창현 • 이만희 • 이양수

이 용・임이자・정운천

정진석 · 정희용 · 조명희

최츄식 · 최형두 · 한기호

한무경 • 허은아 • 홍석준

의원(42인)

제안이유

세계 최고의 수도권 인구집중,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경제·교육· 문화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6%가 소멸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음.

이제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로,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멸(共滅) 로 갈 수도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음.

그런데도 국가적 차원 또는 정부에서 추진해 온 수많은 지방 분권과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이 이러한 급박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컸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매우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그 결과 막대한 재원(財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업 등이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현실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유인(誘因)이 없었던 반면, 교통망의 발전과 경제적 기회의 증가 등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커지게 되어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높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 분석하고 국가 전략계획과 각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추진 체계하에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그 특별지역에서는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의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지방 생활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한 지원 내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값 안정과 출산율 상승 등 정책의 추동력(推動力)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중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 (안 제1조).
- 나.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 방소멸위기대응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지방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

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둠(안 제12조).

- 마.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특정 지역의 지방소멸위기의 정도를 계량 적·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하여 공표 할 수 있음(안 제15조).
- 바.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신청에 따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및 활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 어려운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함(안 제16조).
- 사.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21조).
- 아. 개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주택 취득 과세 특례, 기초연금 지원, 거주 및 취업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 자.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부지 제공 특례 등을 규정함 (안 제25조 및 제27조 등).
- 차. 보건·의료여건 개선 시책 마련,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교육시설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사회복지·교육 등에 관한 지원과 특례를 둠(안 제28조 및 제33조 등).
- 카.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특례, 문화·관광시설 이용 등에 관한 지원,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 등 문화·관광 등에 관한

지원과 특례를 둠(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 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함(안 제4 0조).
- 파.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관련 지역별 각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43조).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의 심각한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강화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을 말한다.
- 2.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이란 수도권 인구 집중,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및 활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3. "지방이전"이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실질적인 거주나 취업, 창업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 또는 광역시(「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진출

기업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를 말한다)에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개인의 주민등록 또는 법 인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4.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소멸위기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방소멸위기특별 지역에 대한 지원과 그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재원(財源)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과 기업의 권리 및 책무) ① 국민은 지방이전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
 - ② 국민은 지방이전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③ 국민과 기업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의 시책 수립ㆍ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방이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소관 법령을 정비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 법에서 규정한 특례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 립하거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

제2장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 2. 지방소멸위기의 현황과 전망
 - 3. 제15조에 따른 지방소멸위험지수 등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 정을 위한 기준
 - 4.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세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
 - 5. 지방이전 개인의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6. 지방이전 기업 등의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7. 지방이전 의료기관과 교육기관 등의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8. 지방소멸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갈등 및 이해관계 조정과 의견수 렴에 관한 사항
 - 9.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배분 등의 방안
 - 10.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2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⑥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부문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방소멸위기대응 부문별 시 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방소멸위기대응 시·도별 시행계획(이하 "시·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해당시·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도별 시행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시·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실태조사)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자료

- 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 1. 인구구조 및 그 변화와 지역별 상황 등 제15조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지수와 관련된 사항
- 2. 지방의 경제 관련 현황
- 3. 지방의 교육 · 문화 관련 현황
- 4.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 해당 연 도의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

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추진 체계

- 제12조(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기본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별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 지방소멸위험지수의 개발·관리
 - 5. 지방소멸위기대응 시책과 사업의 발굴·평가·조정 등에 관한 사항
 - 6. 개인, 기업과 대학교 등의 지방이전과 그에 따른 세제 혜택에 관한 사항
 - 7.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8.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지원 정책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 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 10.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을 위한 사업 추진
- 11.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국무조정실장
-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4.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 국적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4명
- 5. 「국회법」 제34조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 ⑥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전국 단위 경제단체 대표자와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
-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와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

- 3. 전국 단위 시·도민 연합단체 대표자 및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 4. 인구구조 및 지역경제 발전 등 지방소멸위기대응에 관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⑦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된다.
- 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방소멸대응특별지원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특별지원단(이하 "지 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원단은 위원회 사무 처리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방소멸대응지역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할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지역위원회를 둘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대응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지방소멸대응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방소멸위험지수의 개발 등)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특정 지역의 지방소멸위기의 정도를 계량적·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이하 "지방소멸위험지수"라 한다)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②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거나 반영하여 야 한다.
 - 1. 인구의 자연감소율 및 유입·유출 인구의 비율
 - 2. 가임(可姙)여성 인구의 수
 - 3. 출생률
 - 4. 고령(高齡) 인구의 비율

- 5. 인구 대비 생산활동 가능 인구의 비율
- 6. 지역 면적 대비 인구의 비율
- 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재정 여건
- 8. 지역 내 총생산
- 9. 지역 내 창업과 기업활동 관련 상황
- 10.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지방소멸위험지수의 개발과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에 따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및 활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존속이 어려운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12조에따른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할 때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및 활력 저하 등으로 관할 지역이 소멸 위기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구 증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해제 신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와제12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리계획)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리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2. 개인과 기업 등의 해당 지역으로의 이전 촉진에 관한 사항
 - 3. 해당 지역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인구와 주택 등 공간 수용(受容) 계획에 관한 사항
 - 5.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소멸위기특별지

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또는 대학 등은 관리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기업도시가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세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둘 이상 복합화하여 설치되는 경우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위치한 도서(島嶼)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島嶼民)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제19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 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 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 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임대 또는 매각 계약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제공) 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유선·무선·화상통신과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이하"비대면행정서비스"라 한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대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스템을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1조(지방이전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

하여 지방이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방이전 및 정착 관련 상담, 안내
- 2. 지방이전 및 정착 관련 통계자료, 세제 혜택과 복지·교육·문화 등 관련 정보의 제공
- 3. 지방이전에 필요한 택지와 시설 부지 등의 우선 공급 사업
- 4. 개인과 기업 등의 지방이전 지원 관련 정책 조사, 지원사업 발굴
-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방이전 개인이나 기업·대학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
-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와 지원센터 지정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특례

제22조(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전에 보유하였던 1채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1채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새로취득하는 1채의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거주 목적의 1채의 주택(「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을 받은 사람이 수도권 또는 광역시로 이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 제23조(기초연금 지원 특례) ①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모두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다.

- ② 「기초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방소멸위기특별 지역의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 제24조(거주 및 취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전입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수(改修)·보수(補修)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 주택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지방이전 개인에게 택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택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 이상 50년 이내로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 개인의 생활안정과 생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출산장려금 지급
 - 2. 취업 알선에 필요한 상담과 적성검사
 - 3.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 4. 창업에 필요한 자금, 기술 지원 및 컨설팅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원, 택지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 ② 수도권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이전일이후 최초의 과세연도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을 감면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전액을 감면하다.
 - ③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간 법인세의 1 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제26조(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창업 시의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 ① 국가는 수도권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한다.
 - ② 제1항에서의 상속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에 따

- 른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업상속의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의 승계에 대하여 강화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인정되도록 한다.
- ③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창업자금에 대하여 강화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인정되도록 한다.
- 제27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부지 제공과 특례 및 지원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 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부지(敷地)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법인에게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국법인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소멸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복지 · 교육 등에 관한 지원과 특례

- 제28조(보건·의료여건 개선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같은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의 확보에 필요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주민들이 응급·심혈관·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지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심혈관·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및 그 인접지역 내의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에서 의료기관의 주요 거점(據點)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지역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제12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시설·설비 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거점의료기관과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인력과 관련한 등급과 간호사 수의 산정에서의특례(간호사 외에,「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인력을 최소 30퍼센트의 비중으로 포함하여 등급과 간호사 수를 산정하고 이를 진료수가에 가감하여 산정하는 등의 특례를 말한다)를 통한 요양급여 기준 등에서의 우대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시지역거점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비용의 특별 가산

- 3. 전문의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하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제 혜택의 부여
- 4. 간호인력 확보와 그 인건비 지원의 강화
- ④ 지역거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 요건, 전문성과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한 평가와 「보건의료기본법」 제5 2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등 의료질 평가에서 100분 의 20 이상의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우선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지역거점의료기관에서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원진료와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의 기본 부담률을 같은 조에 따른 기본 부담률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소속 의료인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료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지방소멸위기특별 지역에 소재하거나 설립되는 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 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

국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 특례에 준하여 법인세 감면이 인정되도록한다.

- ② 국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거나 설립되는 병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입하는 경우「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의 요건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제31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특례 등) 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한 사람과 기업 등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같은 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과 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지방이전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

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소재지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법」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산의 관리 및 보호와 회계의 구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하여 해당 대학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등에도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이전하려는 대학 등의 교육시설이 직전에 소재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변경 등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세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33조(교육시설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추가적인 세제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

별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 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등의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원 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재정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가점(加點)이 부여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대하고 그에 따라 교육재정 등의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제34조(지방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 멸위기특별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

라 한다)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대학의 등록금이 수도권 대학 등록금의 10 0분의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점(加點)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35조(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 및 관련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그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다.
 -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 3. 해당 지역의 현안
- ③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의 개발과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특성 화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문화 · 관광 등에 관한 지원과 특례

제36조(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문화·관광 등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문화예술회관
- 2. 관광시설
- 3. 도서관
- 4. 박물관
- 5. 레저 · 체육 시설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 관광 관련 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문화·관광등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등시설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설립과 등록 요건 등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구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지 등에 문화·관광등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 원할 수 있다.
- 제37조(문화·관광시설 이용 등에 관한 지원) 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문화·관광등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 또는 관람료 등을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이 문화·관광 등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문화·관광등시설의 운영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 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38조(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특별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인접 지역에 소재한 골프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른 과세대상의 구분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 구분(분리과세대상)이 적용되도록 한다.
 - ②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주민의 해당 지역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방 거주 주민의 건강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상의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39조(사업비의 지원과 특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또는 시·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④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제4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회 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회계와 지방소멸 대응 관련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6항에 따른 차입금
- 3. 그 밖의 수입금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 2. 제5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화
- 3.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회계 운용에 관한 경비
- ⑤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고,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⑦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8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 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1조(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본계획

과 부문별시행계획, 시·도별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부문별시행계획 또는 시·도별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제 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면제할수 있다.
- 제43조(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지방이전 관련 지역별 지원 명세와 관련 사업 정보
 - 2. 지역별 경제활동, 창업 및 기업활동 등 관련 정보
 - 3. 지역별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 등 관련 정보
 - 4. 지역별 생활 및 공간 정보
 - ②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정보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③ 그 밖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업무의 위탁)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 2. 제43조에 따른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및 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및 지방소멸대응특별지원단의 구성과 실태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에 따른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에 대한 지원
-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
-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2.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지원 중 문화시설 등에 대한 지원
- ④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지원 중 레저·체육 시설 등에 대한 지원